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8 선고 2019가단21192 판결 [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19. 8. 2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7,717,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3. 1.부터 2019. 5. 23.까지는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19 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,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 피고는 금 37,717,994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3. 1.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연 6%,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3. 일부 기각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(이하 '소촉법'이라고 한다)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 에 관한 규정이 2019. 5. 21. 개정·공포되어 2019. 6. 1.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. 5.31.까지의 기간에는 기존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15%가 적용되나, 2019. 6. 1.부터 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%로 변경되었으므로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,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.

판사 이지현

별지